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위 행위로 인한 임용자 합격 및 임용취소 근거 마련〉
■ 허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81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19.
3. 회부연월일 : 2025. 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은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권자 등은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경우 해당 군인의 합격이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군인에 대한 합격·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군인 임용과 관련한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9조의2(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누구든지 군인 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현행법에는 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

□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합격 및 임용취소 등의 제재는 합격·임용된 당사자가 직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비위행위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람이 계속 합격자·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군인 임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국가공무원법」 1), 「지방공무원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등에서도 임용비위 관련자 합격 및 임용취소에 관한

1)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군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와 유사한 임용 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현행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4)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 ② 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내용 및 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규정을 두고 있음. 판례에 의하면, 국방부(육군참모총장)는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규칙만을 근거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을 행하여 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음.

- 따라서 동 시행령 규정만으로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공익적 필요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 「국가공무원법」과의 법체계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용 취소 규정 외에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등 제재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의2(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③ (생략) <신 설>	제9조의2(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③ (개정안과 같음) 제9조의3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u>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시험·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u> <u>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	---

- 국방부는 군인 임용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